

### ●환경부공고제2020-969호

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4일

환 경 부 장 관

####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장의영향평가서·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7182호, 2020. 3. 31. 공포, 2021. 4. 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
- 전자우편 : hcyun77@korea.kr
- 팩스 : 044-201-6830

#####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[www.me.go.kr](http://www.me.go.kr))를 참조하시거나, 환경부 화학안전과(전화 044-201-6843, 팩스 044-201-683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●환경부공고제2020-972호

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4일

환 경 부 장 관

##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(안) 행정예고

## 1. 제정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 등을 위해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심의위원의 승인·심의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(국민안전, 공정, 보안유지)을 규정(안 제3조)  
 나. 위원회 구성인원(20명), 위원장 및 위원요건(해당분야 전문가), 결원시 위촉방법, 임기(2년)를 정함(안 제4조)  
 다. 위원의 해촉 및 위촉 방법, 위원의 사임방법 및 위원의 제척·기피 등을 정함(안 제5조·제6조)  
 라.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여부 심의 및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·검토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(안 제7조)  
 마. 심의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한 사무국 설치근거 및 사무국의 기능(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회의록 작성 등), 회의내용 비공개 등의 원칙을 규정함(안 제8조·제9조)  
 바. 심의위원 및 사무국의 비밀 누설금지 원칙 등을 정함(안 제10조·제11조)

## 3. 의견 제출

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(참조 :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nkhwang@korea.kr

2) 주소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

3) 팩스 : 044-201-6786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(전화 : (044) 201 - 678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527호

「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」 제정(안) 행정예고